

의안번호	2218669
의 퇴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6. 6. 5.
추계번호	26A2423

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의 ①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, ②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2조)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원 2030년 2억 5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5,000만원(연평균 1억 1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2조)	250	—	—	250	—	500	100
합 계	300			250		550	11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－ 1. 기업승계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－ 2. 기업승계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－ 3.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4. 그 밖에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○ 그 밖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2	안 제7조(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)	○ 중소기업부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- 1. 승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- 2. 승계 후 경영안정·성장촉진·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- 3. 기술·인력·금융·경영 등 분야별 상담·자문 및 교육 - 4.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- 5. 그 밖에 기업승계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3	안 제8조(기업승계자 발굴·육성)	○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- 1. 기업승계자 및 기업승계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승계 인식확산 홍보 및 기업승계에 관한 자문·중개 - 2. 기업승계 희망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- 3. 그 밖에 기업승계 촉진과 기업승계자 발굴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4	안 제9조(계정의 설치 및 재원)	○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계정(이하“계정”)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계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- 1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-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-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승계 촉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- 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- 3. 그 밖에 기업승계 촉진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○ 그 밖에 계정의 수입·지출 및 운용과 회계·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5	안 제10조(자금 등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하여 자금의 융자, 출연,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수립·운용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11조(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)	○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승계 지원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)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(이하 “기술보증기금”이라 한다) － 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－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－ 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－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○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2항) － 1. 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－ 2. 기업승계를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지원 － 3.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융자·보증을 비롯한 자금 지원 － 4. 그 밖에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통합플랫폼(이하 “플랫폼”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 ○ 제3항에 따른 플랫폼은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하여 관리·운영하며, 각 지원기관은 플랫폼 정보의 최신화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(제4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 -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과 기업승계 플랫폼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
7	안 제12조(기업승계 실태조사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기업승계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- 실태조사의 범위,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8	안 제13조(조세에 대한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7조(기업승계에 대한 비용지원)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를 통한 기업승계에 수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8조(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—
2	안 제7조(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)	X	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의 지속성장 지원, 기업승계자 발굴·육성, 기업승계 계정의 설치, 자금 지
3	안 제8조(기업승계자 발굴·육성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9조(계정의 설치 및 재원)	X	원, 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5	안 제10조(자금 등 지원)	X	
6	안 제11조(기업승계 지원 기관의 운영)	X	
7	안 제12조(기업승계 실태 조사)	○	—
8	안 제13조(조세에 대한 특례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세제지원의 대상·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9	안 제17조(기업승계에 대한 비용지원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를 통한 기업승계에 수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·방법 및 지원 수준 등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10	안 제18조(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승계 자문·중개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경영실태 조사의 대상, 주기,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중소기업 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예산 현황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벤처캐피탈선진화- 기업승계M&A지원 (일반회계, 5231-302)	(인식확산) 제3자 M&A 기업승계 인식 형성·확산을 위해 기업· 기관 등 M&A 시장 참여자 대상 네트워크 운영 (수요발굴) M&A 준비 단계별 기초·종합 컨설팅 지원 * 법률·회계·세무·기술보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 중개기관 컨설팅 (매칭 인프라) 매수·매도기업 매칭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-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(기술거래사업화·플랫폼)와 연계하 여 ‘기업승계 M&A’ 전용 플랫폼 신설·운영 * M&A 희망기업의 매도·매수 신청, 지원사업을 비롯한 M&A 보 증·기술보호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	850 *인식확산 150 수요발굴 350 매칭인프라 35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
는 ①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, ②기업승계 실태
조사(안 제12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
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
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027년에 5,000
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 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M&A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활성화 방안 연구”
(중소벤처기업부, 2024년, 5,000만원) 등이 있음
 -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·시행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,000만
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-	-	-	-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2조)

-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3년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2억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 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실태조사 실시 사례로는 “기술혁신형기업 정밀실태조사”(2025년, 1억 5천만원), “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”(2025년, 3억원), “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”(2025년, 3억 2,200만원) 등이 있음
 - 동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2조)	250	-	-	250	-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